

환경분야 21세기 소음정책

1. 서론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라 환경소음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요구는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소음 기반시설 구축, 환경소음과 관련된 제반기준 재설정, 항공기소음 등 측정망 운영방안 개선, 생활소음 관리기준 개선, 소음진동 관리방안 개선 등 소음·진동 관리 선진화를 위한 21세기형 소음정책이 필요하다.

2. 소음정책 선진화 방안

1) “환경소음 기반시설 구축방안” 으로는 현재 수동식의 측정망 운영을(전국 1386개지점) 자동측정망으로(고정식 124개소, 이동식측정차량 12대) 전환한다.

2) “환경소음과 관련된 제반기준 재설정” 정책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기준 설정시 외국의 선진사례 및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 소음환경기준 적용지역 재설정 및 실내소음기준 도입 등이 필요하다.

3) “항공기소음 등 측정망 운영방안 개선” 정책에서는 현재 항공기소음 평가기준 WECPNL를 새로운 지표(Lden, Ldn, LAeq(24h))로 변경하여 항공기소음 이외의 평가지표와의 부합성, 국제적 추세, 측정의 용이성, 주민이해도의 증대 등 긍정 효과가 예상된다.

4) “생활소음 관리기준 개선” 에서는 공사장 소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교, 병원 등 정온지역에서 추진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소음자동측정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한다.

5) “소음진동 관리방안 개선” 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적용대상 공사장, 소음관리기준, 시간대별 사용금지 시간, 소음표시 제도, 소음발생원 저감대책, 경로상 저감대책, 저소음장비 활용요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공동 또는 각각 관리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소음진동관리법상에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3. 고찰 및 제언

환경소음자동측정 구축계획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음자동측정기를 추가 확충하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소음지도 작성과 연계·운영하여 정확한 소음자료를 확보, 소음노출인구 산정, 환경영향평가지 활용 등 정책 자료로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환경소음과 관련된 제반기준에서는 소음환경기준 적용대상지역을 재설정(도로변지역의 정의를 소음영향범위인 도로변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으로 조정)하고, 병원, 교육시설 등 정온시설에 대한 실내소음 환경기준을 도입하는 등 환경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확립하여, 정온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소음 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공기소음 평가기준을 Lden

등으로 변경하여 항공기소음이외의 다른 교통소음 또는 환경소음과 복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소음영향범위에 있는 노출인구추정, 환경평가예측 및 저감대책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각 기관 및 환경부 지방환경청에서 운영·관리하는 항공소음측정망을 환경관리공단(항공소음측정망 중앙 관리센터)에 통합하여 위탁·운영토록 하고 항적자료 등 필요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제공받아 자료를 검토하여 환경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조치한다. 이로 인하여 측정지점 및 자동측정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측정자료에 대한 통일된 검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생활소음 관리기준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전용주거시설, 학교, 병원 등 정온시설에 대한 공사장 소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소음자동측정망 설치의 의무화 하도록 하고, 공사 공정별·공종별 사용시간대 설정, 시간대별 공사 금지시간 공지, 소음표시 제도 활성화, 저소음장비 활용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관리방안 개선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소음관리방안을 제안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소음진동과 관련된 제반 기준들을 소음진동관리법상에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소음에 대한 선진화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인지영역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소음에 대한 민원 및 주민피해 예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민